



강 남 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징수유예 신청에 따른 승인처리

1.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징수유예 신청서가 2015년 11월 25일 접수(번호 *****)되어 다음과 같이 승인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납 세 자 : *****

나. 주 소 : *****

다. 징 수 유 예 금 액 : ***** (2015년 11월 수시분)
(2009년 귀속)

라. 징 수 유 예 기 간 : 2015.12.01. ~ 2016.5.31.(6개월)

마. 신 청 사 유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사. 검 토 의 견 : **징수유예승인결정**

(2015.12.01.~ 2016.5.31. 유예기간 6개월)

2. 관련 사항 검토

가. 신청사유

- 신청인 ***** 모회사인 *****로서 회사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호텔의 부동산 담보와 개인의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대출받아 운영하는 있고,

대출금 상환에 대한 책임은 물론 회사와 연대보증인이 국세나 지방세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강력한 조항이 있어 체납발생시 자금회수에 따른 회사 부도로 직장폐쇄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한 상반기 메르스사태로 인한 관광객 급감으로 호텔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고 일시에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자금경색에 따른 회사부도가 염려되어 납기내 납부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나.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징수유예 등의 요건】 제1항 제3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지방세기본법 제82조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검토내용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법인결산서 상의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2014년 법인결산서 기준

*****이 발생하였음. 재무상태 분석결과 부채총액은 *****으로 더 늘어난 상태임.

라. 검토결과

- 메르스사태 종식 이후 *****의 운영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신청인의 판단과 *****은 2015.11.26. 납기내 일부납부하고 잔액 *****에 대해서는 *****발행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여 징수유예를 승인결정하고자 합니다.

- 붙임 1.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 1부.
- 2. 납세보증서 및 관련서류 1부.끝.

주무관	김용경	지방소득세3팀장	김태영	세무2과장	김광수	기획경제국장	11/27 김용운
-----	------------	----------	------------	-------	------------	--------	---------------------

협조자

시행 세무2과-41191 () 접수 ()
 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5734 /전송 02-3423-8895 / young6912@gangnam.go.kr / 부분공개